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등 현행법령에 대해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업무 이행지침」 제12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체육진흥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체육 진흥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투명성 및 청렴도를 제고하고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명시

2. 주요내용

- 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 진흥사업 예산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15조~제20조)
- 나. 선수 등의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28조)
- 다.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명문화(안 제25조)
- 라.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안 제26조)
- 마. 구미시 체육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명문화(안 제27조)
- 바.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스포츠클럽 용어 정의(안 제2조제9호)
- 사.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명문화(안 제2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18조의 2

「스포츠클럽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체육동호인조직으로서 구미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구미시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노인체육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시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구미시 체육회장(이하“체육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구미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 장학사, 구미시체육회(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 사무국장
2. 위촉직 위원: 구미시의회 의원,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협의에서 제척한다.

1. 협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
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 행정 소관업무의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

제15조(전문체육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성인 및 청소년)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발굴·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체육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단체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
 3.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5.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7.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체육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2.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
6. 장애인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양성
7.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
8.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9.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1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학교체육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노인체육 진흥) ①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3. 노인체육 관련 국내 · 외 교류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 프로그램 · 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
5. 노인체육 관련 국내 · 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6.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 ·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스포츠복지 진흥) ① 시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관련 국내 · 외 교류 및 행사 추진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 프로그램 · 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 컨설팅사업
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① 시장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3. 전지훈련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4. 전지훈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5. 그 밖에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구미시체육회 운영지원 등

제22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 운영) ①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① 체육단체는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검사)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선수 등의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28조(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상담의 실시) ① 시장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교육·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

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사전협의)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시,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 ① 시장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 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및 기업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및 기업
3. 그 밖에 시민 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④ 상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31조(준용)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정[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6. 15.>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위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15.>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장 인 수
	담 당	권 순 모
	담 당 자	윤 광 수 (480-5012)